#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1419 |
|---|---|

제출년월일 : 2012. 07.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형 종량제 (1L, 2L) 봉투 제작·판매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형(1L, 2L) 전용봉투 추가 제작
-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안 제9조와 별표 1)
- 규격과 재질 규정(안 제11조와 별표 3)

나. 납부필증
- 규격과 재질, 모형 등 규정(안 제11조의2와 별표 3)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2.06.01 ~ 06.22) 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조례 제 호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 법 시행규칙"을 "이때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납부필증칩"이란"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폐기물에 관하여"를 "폐기물에"로 한다.

제5조 중 "관할"을 "담당"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적정"을 "적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단체에게는"을 "단체에는"으로, "지원, 납부필증 등을 지급"을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게"를 "다량배출사업장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수료라"를 ""수수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수료는"을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자는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를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 중 "납부필증칩"을 "납부필증"으로, "일시적으로"를 "일시에"로, "어려운 경우"를 "어려울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용이하"를 "쉽"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납부필증칩의 제작 및 안전관리)"를 "(납부필증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필증칩"을 "납부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필증칩을 제작하는 경우"를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로, "한다"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 봉투 공급과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는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을 "법 제13조"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짐 싣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의 규정"을 "조"로, "부적합한 경우에는"을 "부적합하면"으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할"을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재활용 할 때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0조제4호의 규정"을 "제10조제4호"로, "수거하여"를 "거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척하거나"를 "씻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를 "담당 구역에 있을 때"로, "관할"을 각각 "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제4항에 따라 통지"로, "발생한 경우"를 "발생하였을 때"로, "통보"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할"을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적으로"를 "우선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이 때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을 "이때 규칙 제10조제4호"로, "수거하여"를 "거둬가"로, "경우를"을 "것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로부터"를 "사업개시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1호"로, "의해"를 "따라"로, "경우에만 해당) 및"을 "때에만 해당),"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나. 발생억제방안 변경

제16조제4호다목 중 "위탁)을 변경한 경우"를 "위탁) 변경"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내용 변경"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을 "거둬 재활용하는 자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법 제68조의 규정"을 "법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부과한 경우"를 "부과하였으면"으로, "2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의 규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각각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봉투 제작 분야에서 음식물류전용(초록)란을 삭제한다.



16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9조 관련)

## 1. 종량제봉투

(단위 : 원)

| 구 분 | 판매 단위 | 규 격 | 공급액 | 판매이윤 | 판매가격 |
|---|---|---|---|---|---|
| 단독주택<br>공동주택 | 매 | 1ℓ | 27 | 3 | 30 |
| | | 2ℓ | 55 | 5 | 60 |
| | | 3ℓ | 64 | 6 | 70 |
| | | 5ℓ | 100 | 10 | 110 |
| 음식점 등 | 매 | 10ℓ | 173 | 17 | 190 |
| | | 20ℓ | 328 | 32 | 360 |

## 2. 납부필증

(단위 : 원)

| 구 분 | 판매 단위 | 규 격 | 공급액 | 판매이윤 | 판매가격 |
|---|---|---|---|---|---|
| 단독주택 | 개 | 3ℓ | 64 | 6 | 70 |
| | | 5ℓ | 100 | 10 | 110 |
| 음식점 등 | 개 | 10ℓ | 173 | 17 | 190 |
| | | 20ℓ | 328 | 32 | 360 |

[별표 2]

## 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제10조 관련)

| 종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 음식물류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조리 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 |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나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br>-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br>- 비닐·병뚜껑·조개껍데기·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br>-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 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br>- 호두 등의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 1회용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10조 관련)

가. 배출지역 : 시내동 전 지역(목행, 달천 일부 제외)

나. 수 거 일 : 주 6회(월요일 ~ 토요일)

※ 필요하면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휴에는 2일만 수거하지 않음.

다.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별 지정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배출
- 음식점과 그 밖의 지역 : 해당상가 건물 앞

라.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 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음식점, 그 밖의 지역 : 수거일 해가 진 뒤 ~ 다음 날 05:00시

마.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종량제봉투
- 단독주택, 음식점, 그 밖의 지역 : 전용수거용기

바. 배출방법

- 공동주택 : 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 음식점, 그 밖의 지역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개별배출용기에 납부필증을 칩 부착함에 꽂아 배출

[별표 3]

## 납부필증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설명(제11조 관련)

### 1. 납부필증

가. 납부필증 규격과 재질

| 구 분 | 종류별 | 규 격 | 두 께 | 재 질 |
|---|---|---|---|---|
| 납부필증 | 3ℓ | 가로 3.0cm 세로 2.7cm | 1.5mm | PE (플라스틱) |
| | 5ℓ | 가로 3.0cm 세로 2.7cm | | |
| | 10ℓ | 가로 3.0cm 세로 2.7cm | | |
| | 20ℓ | 가로 3.0cm 세로 2.8cm | | |

나. 납부필증 제작 형식 : 칩 형태

다. 제작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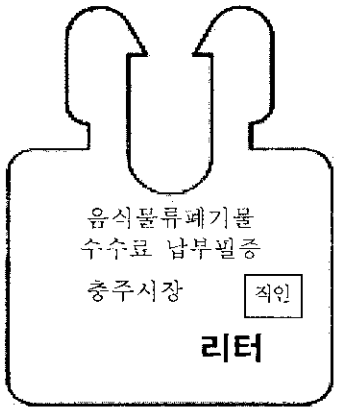

##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가. 전용봉투 규격과 재질

| 구 분 | 용량 | 사 양 | | 재 질 | 색상 |
|---|---|---|---|---|---|
| | | 봉투규격 | 두 께 | | |
| 종량제봉투 | 1ℓ | 15×29.5cm | 0.025mm | 고밀도 폴리에틸렌 | 초록 |
| | 2ℓ | 19×35.5cm | 0.025mm | | |
| | 3ℓ | 22×39.5cm | 0.025mm | | |
| | 5ℓ | 26×46.5cm | 0.025mm | | |
| | 10ℓ | 33×56.5cm | 0.030mm | | |
| | 20ℓ | 42×69.5cm | 0.030mm | | |

### 나. 제작모형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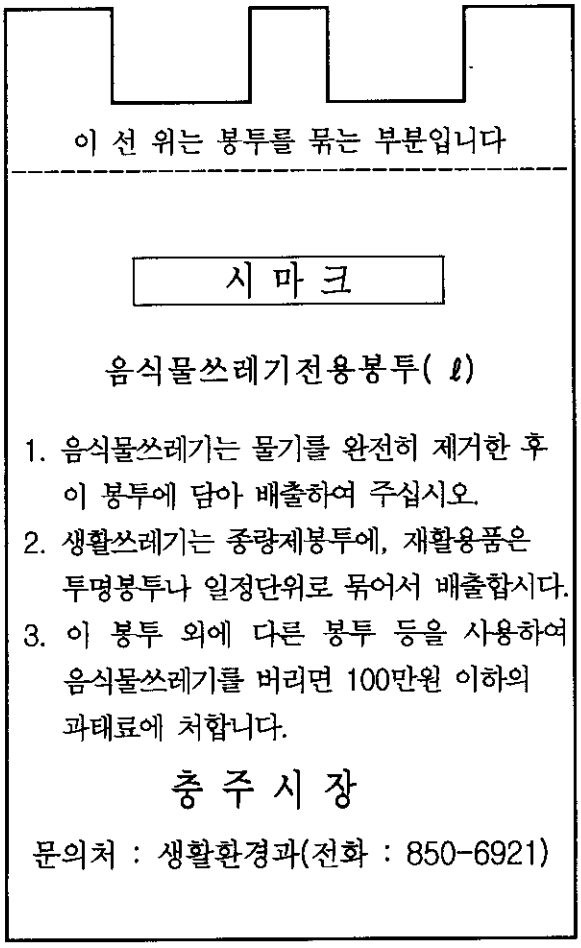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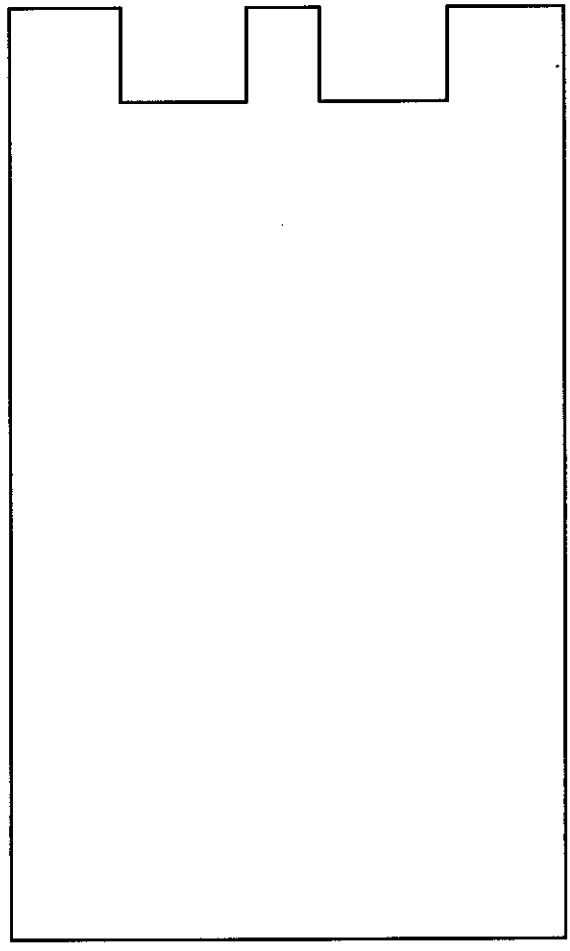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봉투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만 포함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 적용법 | 부 과 항 목 | 부과금액(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폐기물 관리법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 | | |
| |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 | 10 | 20 | 30 |
| |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였을 때) | 20 | 30 | 50 |
| |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때(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했을 때만 해당) | 50 | 70 | 100 |
| |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자 (법 제15조제3항) | | | |
|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30 | 50 | 100 |
| |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았을 때 | 30 | 50 | 100 |
| |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 | | |
| |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 | 30 | 40 | 60 |
| |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때 | 60 | 80 | 100 |
| |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 20 | 30 | 50 |
| |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3조 관련) | 100 | 300 | 500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 3. ----------<br>----------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br>----------<br>----------<br>----------<br>------. 이때 규칙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17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말한다. | -----.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7. "납부필증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 7.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 |
| 8. "납부필증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 8. (삭제)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 담당 ----------.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 적절----------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 ③ ---------- ---------- 필요하면 ---------- ---------- ----------. ---- ---------- ----------. |
| ④ 시장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실적이 우수한 가구 및 단체에게는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 납부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 ----------단체에는 ---------- ----------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 배출사업장에게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 ---------- ---------- 다량 배출사업장에 ---------- ----------. |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수수료"라 ---------- ----------. |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 |
|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br>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br>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자는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br>----------<br>----------<br>----------<br>----------<br>----------<br>----------<br>----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③ ----------<br>----------<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칩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 2. ----------<br>----------<br>----------<br>----------<br>----------<br>----------. -<br>----------<br>납부필증 ----------<br>----------<br>---------- 일시에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같은 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br>----------<br>---- 어려울 때에는 ------<br>----------<br>----------<br>----------<br>----------<br>----------<br>----------<br>------. |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 략)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
|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③ ----------<br>----------쉽----------<br>----------<br>----------<br>----------<br>----------. ----------<br>----------<br>----------<br>----------.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의2(납부필증칩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칩은 시장이 제작한다.<br>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칩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관명·사용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유출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 제작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① ---------- 납부필증 ----------.<br>② ----------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
| <신 설> |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 봉투 공급과 판매규정을 준용한다.<br>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는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법 제13조----------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짐 싣기---- ---------- -----. |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 인정하면 ---------- ---------- ---------- ---------- ---------- ---------- ----------. |
| ③ 시장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 조---------- ---------- ---------- ---------- 부적합하면 ---------- ---------- 법 제68조제1항제1호---------- ----------. |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 담당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6호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도 또한 같다. | ② ---------- 제8조에 따른 ---------- 재활용 할 때만 해당한다) ----------. |
|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때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씻거나 ----------. |
|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 | ④ ------ 제2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담당 구역에 있을 때---------- ---------- 담당---------- ---------- --------- 통지하여야 ----.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 ---------- ---------- ---------- ---------- -------- 발생하였을 때---- ---------- ---------- 통지 ---------- ---------. |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담당 ---------- ---------- ---------- ----------. |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 ② ---------- ----------우선하여 ---------- ---------- |



181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br>----------<br>----------<br>-----. |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br>----------<br>----. |
| 1. 재활용을 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때 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br>----------<br>----------<br>----------<br>----------<br>----------<br>----------<br>---------. <후단삭제> |



18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2. ----------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 . |
|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제2호---------- 제1호 ---------- . |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 . |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 사업개시일 부터 ---------- . |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을 하려면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 | 2. ---------- 따라 ---------- |



183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분명하게 밝히되, 규칙 제10조제4호 규정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함을 밝혀야 한다. | ----------.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제1호----------따라 ---------- 때에만 해당), ----------. |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방안 변경 |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다.----------위탁) 변경 |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 라.---------- |



18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 ---------- ---내용 변경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하여야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2. ---------- ---------- ----------거둬 재활용하는 자의 ---------- ---------- |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제15조에 따른 ---------- ---------- ---------- 제16조에 따른 ---------- -------- 법 제68조-------- ----------. |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 ② ----- 제1항---------- ------부과하였으면 ------ ---------- 2개월-----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확인하여야 한다.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br>----------<br>----------<br>----------<br>----------<br>----------마련하여야 ----.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br>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br>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 ② ----------<br>----------<br>----------<br>----------<br>----------「지방세법」<br>------. |
| <신 설> |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신 설> | 제2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시행일 2011.7.24]]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시행일 2011.7.24]]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7.24]]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7.23, 2012.6.1] [[시행일 2013.6.2]]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7.24]]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개정안은 소형(1L, 2L)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그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1L, 2L제작 재정 소요가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는다.

4. 작성자

- 환경수자원본부 생활환경과장 김 영 배